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1. 12. 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1. 12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등 지방의회 관련 법규가 일괄 개정(2022. 1. 13. 字 시행)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
(안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제71조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”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윤리특별위원회) ①의원의 자격심사·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차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,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(다만,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)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u><신 설></u>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----- ----- ----- ----- --. <u>제7조의2(윤리특별위원회) ①의원</u> <u>의 자격심사·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</u> <u>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차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,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(다만,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)</u>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